

삼척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 보고서

1995년 4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 4월 4일 삼척시장
- 나. 회부일자 : 1995년 4월 4일
- 다. 상정일자 : 제4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산입건설위원회('95. 4. 10)에서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요지(환경보호과장 박진하)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및 민간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권리체계를 확립함과, 불결하고 시설 미비, 보수를 요하는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명령과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지방자치단체장 판단 아래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동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 또는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하며,

유료화장실의 설치 승인은 제정조례안 제 5 조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전담관리인을 두며, 화장지, 비누, 수건등 편의용품을 비치 제공할수 있는 시설물에 한하여 설치 승인하며,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1차에서부터 3차까지 부과할수 있으며 최고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음.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 문순기)

동 조례는 오수·분뇨 및 죽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주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써 이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다수의 주민이나, 관광객이 밀집한 공중장소의 화장실에 대한 시설관리 및 청결문제는 국민보건위생 차원에서도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항으로써,

시관내의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일정한시설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한 유료화장실 승인과 승인요건 위배시 수시 시설점검을 통한 개선명령, 과태료부과등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조례의 제정은 국민복지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요지	답변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제9조의 편의용품비치제공에 지역여건상 비치는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한 구체적인 대상지는 ?○ 관내의 공중화장실 현황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조례상의 미비한 점은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정하게 됨.○ 관내 총 54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유료화장실은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요지 : 없음.